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444 발의연월일: 2025. 2. 26.

발 의 자:김예지·김선교·박덕흠

최수진 · 정성국 · 김소희

조은희 · 서천호 · 강대식

윤재옥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교원은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,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은 교육의 질적 제고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 환경 조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교원의 전반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의2(교원의 건강증진 지원 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9조의2(교원의 건강증진 지원
	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
	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
	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
	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
	<u>여야 한다.</u>